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3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예비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4

3. 정정사유 : 종류수익증권 신설,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법령변경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정정전1)	정정후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정정전2)	정정후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정정전3)	정정후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정전4)	정정후4)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정정전5)	정정후5)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신설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외

정정전1)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58431
A	48779
B	59042
I	63114
C-I	AE960
C-W	AE961
C-P	AE962
S	AO985
C-P1	AW579

정정후1)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58431
A	48779
A-e	**B1601**
B	59042
I	63114
C-I	AE960
C-W	AE961
C-P	AE962
S	AO985
C-P1	AW579
S-P	**B1602**

정정전2)

종류별	가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제한없음	연0.398%
Class 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연 0.20%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연 0.00%
Class C-I	건별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연 0.05%
Class C-W	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나.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연 0.00%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0.321%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15%
Class 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0.279%

정정후2)

종류별	가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제한없음	연0.398%
Class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연0.199%**
Class 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연 0.20%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연 0.00%
Class C-I	건별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연 0.05%
Class C-W	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나.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연 0.00%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0.321%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15%
Class 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0.279%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연0.0837%**

정정전3)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정정후3)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정정전4)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B	Class I	Class C-I	Class C-W	Class C-P	Class S	Class C-P1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의 0.3%	-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시
환매수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90%	-	이익금의 90%	이익금의 90%	이익금의 90%	이익금의 90%	이익금의 90%	-	환매시

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B	I	C-I	C-W	C-P	S	C-P1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6 %	연 0.16 %	연 0.16 %	연 0.16 %	연 0.16 %	연 0.16 %	연 0.16 %	연 0.16 %	매3개월후급
판매회사보수	연0.398 %	연 0.20 %	연0.00%	연 0.05 %	연 0.00 %	연0.321 %	연0.15%	연0.279 %	
신탁업자보수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0.012 %	연0.012 %	연 0.012 %	연0.012 %	연0.012 %	연0.012 %	연0.012 %	연0.012 %	
기타비용	연0.0116%	연0.0122%	연0.0104%	연0.0116%	연0.0116%	연0.0116%	연0.0116%	연0.0116%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0.6016%	연0.4042%	연0.2024%	연0.2536%	연0.2036%	연0.5246%	연0.3536%	연0.4826%	-
모투자신탁 기타비용	-	-	-	-	-	-	-	-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모투자신탁 비용 포함)	연0.6016%	연0.4042%	연0.2024%	연0.2536%	연0.2036%	연0.5246%	연0.3536%	연0.4826%	
증권거래비용	연 0.0184%	연0.0174%	연0.01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예시

(단위 : 만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6.2	19.3	33.7	75.4

Class B	7.1	15.9	25.6	53.9
Class I	2.1	6.5	11.4	25.8
Class C-I	2.6	8.2	14.3	32.3
ClassC-W	2.1	6.6	11.5	26.0
ClassC-P	5.4	16.9	29.4	66.0
Class S	3.6	11.4	19.9	44.8
ClassC-P1	4.9	15.5	27.1	60.8

정정후4)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매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	-	이익금의 90%
A-e	**온라인가입자**	**-**	**-**	**이익금의 90%**
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보유 또는 집합투자기구	-	-	이익금의 90%
C-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	-	이익금의 90%
C-W	신탁업자	-	-	이익금의 90%
C-P	퇴직연금가입자	-	-	이익금의 90%
S	온라인 판매시스템가입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	3년 미만 : 환매금액의 0.15 % 이내	이익금의 90%
C-P1	연금저축계좌가입자	-	-	-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S-P	서 연금저축계좌가입자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90일 미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 기타비용	합성 총보수?비용비율(모투자신탁 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0.16	0.398	0.02	0.012	0.0116	0.6016	-	0.6016	0.0184
A-e	**0.16**	**0.199**	**0.02**	**0.012**	**실비**	**0.391**	**-**	**0.391**	**실비**
B	0.16	0.20	0.02	0.012	0.0122	0.4042	-	0.4042	0.0174
I	0.16	0.00	0.02	0.012	0.0104	0.2024	-	0.2024	0.0189
C-I	0.16	0.05	0.02	0.012	0.0116	0.2536	-	0.2536	실비
C-W	0.16	0.00	0.02	0.012	0.0116	0.2036	-	0.2036	실비
C-P	0.16	0.321	0.02	0.012	0.0116	0.5246	-	0.5246	실비
S	0.16	0.15	0.02	0.012	0.0116	0.3536	-	0.3536	실비
C-P1	0.16	0.279	0.02	0.012	0.0116	0.4826	-	0.4826	실비
S-P	**0.16**	**0.0837**	**0.02**	**0.012**	**실비**	**0.2757**		**0.2757**	**실비**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예시

(단위 : 만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6.2	19.3	33.7	75.4
Class A-e	**4.0**	**12.6**	**22.0**	**49.5**
Class B	7.1	15.9	25.6	53.9

Class I	2.1	6.5	11.4	25.8
Class C-I	2.6	8.2	14.3	32.3
ClassC-W	2.1	6.6	11.5	26.0
ClassC-P	5.4	16.9	29.4	66.0
Class S	3.6	11.4	19.9	44.8
ClassC-P1	4.9	15.5	27.1	60.8
Class S-P	2.8	8.9	15.5	35.1

정정전5)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4.1.1.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 과세제도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율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정정후5)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 과세제도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12% 단, 세액공제 대상 연간 저축금액은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금외수령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예 비 투 자 설 명 서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펀드코드 : 58431)

예비투자설명서